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인주화

2026/ 1/ 21 통권 1763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9)
 - 이해 상충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파악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자산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시 부가세 신고서 첨부서류〉

영세율 적용 대상		첨부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관광알선용역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환급신청서, 농·어·임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사업자 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서)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세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3호 / 주간 3호

2026. 1. 21.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토지가와 건물가액 안분 방법	표지
CEO의 경영 산책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9) - 이해 상충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파악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 소액 대량구매시 자산화 - 시골집 (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혼인세액공제 요건 - 2026년 바뀌는 주요 제도 한눈에 보기	8 9
직장인Survival	단기 성과보다 장기 역량에 집중하는 태도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999, 2025.04.09) -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 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 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사전법규재산-440, 2025.06.23)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 소상공인 2개월 납부연장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자산 양도시점의 외화차 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1
세무정보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4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48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9)

- 이해 상충의 이해관계자의 범위 파악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독립적이고 성실하게 판단을 내렸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사의 결정 과정에서 이사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익충돌로 인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리스크가 있다.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가 존재할 경우, 이사는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 추구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 결정은 별도로 엄격하게 심사된다.

이사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다면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서, 특히 대규모 주주, 계열사, 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거래나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충실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행위로 불리한 소송·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에서 이해상충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신중한 파악은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했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적 전제로서 법적·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이해관계자의 범위

이해상충 판단 시 고려되는 이해관계자 범위는 회사법, 상법 및 관련 실무와 판례에서 ‘실질적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또는 집단’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공식적으로는 이사 자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주요 주주, 임원), 거래상대방(공급자, 고객 등)이 기본 포함된다. 이사와 관련된 법인, 사업체, 투자 대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가족 등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감사, 주요 임직원, 대주주와 그 계열사, 전략적 제휴업체, 자문기관·컨설턴트 등까지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되며, ‘이해관계 판단’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계열회사 간 거래, 신규 투자나 매각 시에도 적용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특정 거래의 상황, 회사 정책, 관련 법률 및 판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로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최근에는 이해상충 위험 최소화를 위해 “광의의 이해관계자”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추세이다.

● 상법상의 법적 기준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 제542조의9(상장회사 이해관계자 거래) 등에서 이해관계자(이해상충 판단대상)를 규정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이사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본인과 경제적 법률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요 주주, 계열회사, 실제 거래 당사자'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 및 회사규정의 보완적 기준

회사가 정관이나 내부 규정, 거래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열거된 이해관계자 외에도 업종, 회사 특성, 거래 성격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중앙지방법원은 특정 상장회사의 사안에서 대주주이자 이사인자의 임원보수한도 승인 결의 참여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법원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범위 판정의 법적 기준은 상법의 명문 규정과 관련 판례, 그리고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따른 구체적 규정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거래의 유형이나 결의 목적, 이사의 직무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확정될 것이다.

해외 직수출 단가정산 처리 문의

- Q** 수출신고 및 부가세신고 수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업체로 제품수출을 하고 미국업체로부터 대금을 회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과거판매된 수출건에 대해 단가정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1월 ~ 2025년5월까지의 판매내역에 대한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하고, 6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반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거의 각 월별로 단가정산 Credit note을 발행하고, 과거의 홈택스 부가세신고 및 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단가정산을 6월에 한 번에 Credit note 반영을 할 경우, 과거의 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내역은 정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A**
1.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 영세율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관세청 수출신고내역 부분은 국세 내용이 아니므로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대량구매시 자산화

- Q** 당사는 건설공사 가 주된사업이며, 공사시 안전감시용CCTV 10대를 550만원 (1대당 5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 - 비품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즉시상각이 가능하므로, 안전감시목적의 CCTV의 경우 귀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여짐으로 즉시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골집 (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Q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 소유주 (무허가 건물) 에 부속된 토지로 토지등기부등본 상 1983년 4월 10일 재산상속 (접수 1988년 3월 24일)

상속인 : 본인과 사촌들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

(재산세)

문의1) 시골집이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소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 것인지 ?

문의2) 시골집이 무허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무허가 주택에서 부속토지만 지분 보유시 1가주 2주택 기준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

A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1세대2주택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Q 저희는 법인이고 소유한 공장을 A라는 업체로 임대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시 임대대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는 임대한 공장을 창고로 사용하므로 사업소 개념이 아니라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한 공장 사용용도를 당사는 알수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사업주가 납세주체가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 지급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실제의 상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대금 청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다른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대금청구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및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내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세금계산서의 합법적인 선발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세금계산서의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도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의 선발급이 인정되며,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니게 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대금 지급없이세금계산서 선발급후 7일내 대금받는 경우도 가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선발급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수수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상거래 관행상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갈음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후 일정기간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대금지급이 7일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간 계약서나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해당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혼인세액공제 요건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2024년 귀속부터 적용)



혼인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절차	-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2026년 바뀌는 주요 제도 한눈에 보기

변화	내용	영향대상
주담대 규제 강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상향, 대출 취급 시 은행 자기자본 부담 증가로 심사 보수화	주택 매수자, 다주택자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규제지역·6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가상자산 매각대금, 증여·상속세 신고 여부까지 기재	주택 매수자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예정, 재개 시 최대 세율 75%(지방세 제외)	다주택자
상가 관리비 투명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요구권 신설, 관리비 인상 통한 임대료 우회 차단	상가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공제 가능,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제한 없이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
청약·임대 세제혜택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착한 임대인 공제 2028년까지 연장	실수요자, 임대인
국민성장펀드 출범	연 30조원, 총 150조원 규모로 반도체·이차전지·AI 등 전략 산업 투자	기업, 투자자
BDC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중소기업 자금 조달 경로 확대	벤처·중소기업
청년미래적금 출시	월 50만원×3년 저축 시 최대 2200만원 수령. 정부기여금 최대 12%	청년·청년 소상공인
자녀 수 연계 혜택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자녀 1인당' 적용. 유아 무상교육 만 4세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대중교통 환급 확대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기준 초과 교통비 전액 환급, 어르신 환급률 30%	전 연령
친환경차 정책 조정	전기차 추가 보조금 신설, 통행료 감면 연장(감면율 축소)	차량 구매자



단기 성과보다 장기 역량에 집중하는 태도

1. 지금의 성과가 ‘어떤 능력’을 남기는지 돌아보기

하나의 업무를 끝냈을 때 “얼마나 잘 끝냈는가”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익혔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한다. 문제 해결 방식, 커뮤니케이션 방법, 시간 관리 능력처럼 업무 과정에서 쌓인 경험은 다음 일을 더 수월하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

2. 결과보다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면 실수하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되고, 도전은 줄어든다.

반면 장기 역량을 중시하는 태도는 새로운 역할이나 낯선 과제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3. ‘지금 담당 잘하는 일’에만 머무르지 않기

익숙한 업무는 빠른 성과를 보장하지만 성장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조금 느리더라도 사고력, 기획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의 방향을 넓혀준다.

4. 비교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로 두기

단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주변의 성과와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 역량을 기준으로 삼으면 비교의 대상은 어제의 자신이 된다.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성장은 더 안정적인 속도로 이어진다.

5. 성과는 쌓인 역량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눈에 띄는 성과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쌓인 역량이 어느 순간 결과로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조급함을 줄이고, 하루의 경험을 차분히 쌓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자산 양도시점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서면법규재산-4999, 2025.04.09

Ⅰ 질 의

- '18.09.07. 甲 미국주택 구입(1,121.2 ₩/\$)
- 취득가 \$800,000(외화차입금* \$500,000 포함)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담보대출
- '22.9.22. 甲 미국주택 양도 예정(1,396.6 ₩/\$)
- 양도가 \$900,000 외화차입금 상환 \$475,000
※주택 보유기간 중, 모기지론 일부 상환

질의

- 소득법§118의2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 국외자산 '취득시 외화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국외자산 '양도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506, 2025.06.25

Ⅰ 질 의

- (질의1)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 95 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판단시,
-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 (질의2)甲이 보유한 A주택 지분에 대해 소득법§ 95 ②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Ⅰ 회 신

(질의1)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기 A주택(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증여 받은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2019.12.31. 법률 제 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사전법규재산-440, 2025.06.23

Ⅰ 질 의

-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유기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3596, 2025.04.28

Ⅰ 질 의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유기기간을 충족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유기기간을 충족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Ⅰ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 소상공인 2개월 납부연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 123명은 내·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국번 없이 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손택스 신고가 개선됐다.

신고서 작성완료 후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경우 바로 해당 오류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AI 전화상담·홈택스 챗봇상담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상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 의심이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선 신고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2700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에 착수, 총 42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다가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정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 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이다.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4시간 제공하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에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재정경제부, 2026. 1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만원씩 최대 5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VI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재정·세제

- '26.1.1일부터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확대(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 '26.6월부터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 개시

*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마련 가능

- '26.1.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

*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고 ①배당성향 40%이상 or ②배당성향 25%이상+전년비 10% 이상 증가

** 적용세율 (2천만원)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 적용세율 (코스피) 0%→0.05%(농특세 0.15%) / (코스닥·K-OTC)0.15%→0.20%(농특세 없음)

- '26.1.1일부터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15%) 세액공제 신설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2. 교육·보육·가족

- '26.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



*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26.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확대(4→6구간이하)

- '26.1.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되고,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됨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250%이하 가구, (지원비율) 소득구간별로 5~10% 증가

- '26.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26.1.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63→65%이하) 및 지원금 인상**

*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10만원, (학용품비) 연 9.3→10만원, (생활보조금) 월5→10만원

3. 보건·복지·고용

- '26.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증가**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월 기준금액 산정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생계급여사례 : 월 최대지금액 (1인가구) 76.5→82.1만원, (4인가구) 195.1→207.8만원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9→9.5%)하고, '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

- '26.3.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 부담

4. 문화·체육·관광

- '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환급한도 :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 대상으로 20개 지역 선정

- '26.2월부터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 제공(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에 프로그램 개설)

5. 환경·기상

-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신설('26.6월) 및 재난 성호우(예, 시간당 100mm 강수 등)시 별도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26.5월)

* (현행) 폭염주의보-폭염경보 → (변경)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 26.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지진규모 5.0이상, 관측후 5~10초, 대국민)에 추가하여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진도 VI 이상, 관측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 제공

- '26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용자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

*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 1대당 최대 1~2억원 지원

**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및 신산업 프로젝트(이동형 충전, 배터리구독 등) 등에 투자

- '26.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 초과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

* (보장한도) 사고 당 최대 100억까지 보장, (보장기간) 신차 출고 후 3년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오프라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 (온라인) 'K-Startup' 지원포털

- '26년부터 지역자원(공간·관광 콘텐츠 등)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1분기 중 신청 모집 예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공단 누리집)

7. 국토·교통

- '26.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 지출시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수도권 기준) 일반국민 6.2만원, 청년/어르신/2자녀 5.5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

8. 농림·수산·식품

- '26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26년부터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 * 매년 초 공모계획 발표, 연 100개소 이상(마을당 300kw~1Mw)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추진

□ '26년에는 5.4만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실시

- * (아침)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1천원의 아침밥 제공, (점심) 점심값 일부(20%, 월 4만원 한도) 지원

9. 국방·병무

□ '26.1월부터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 신설 및 인상

- * (신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 20,000원 / 학생예비군(기본훈련) 10,000원
(인상) 동원훈련Ⅰ형 82,000원→95,000원 / 동원훈련Ⅱ형 40,000원→50,000원 / 급식비 8,000원→9,000원

□ '26.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과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 *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 만기시 약 2,300만원(납입액 1,08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의 자산형성 가능

□ '26.3.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띠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 지급

- * 군인·군무원 자녀 통합하여 예산범위내 1학년 1학기 성적순 지급,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

10. 행정·안전·질서

□ '26.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

- * (기존) 적의 공습, 지진해일 → (확대)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주민대피가 필요한 상황

□ '26.2.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

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 확대**

* 1인 1계좌 개설 및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급여채권) 월 185→월 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250만원

□ '26.1.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 개시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

□ '26년부터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

* 4개 분야(청년·출산·구직·전입) 알림(1,530종) → ('26년)전 분야 알림(6,000여 종)

**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 → ('26년)농협은행, 삼성카드 추가

재정경제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액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중전				개정								
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기본	850	950	450	-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 (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좌동)								



사후 관리	·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삭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	--	---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

- 추진배경 :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 주요내용 : 2단계 구조로 공제액 재설계 및 사후관리 방식 전환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공제율) 10%(중소: 15%)
-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 추진배경 :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 주요내용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 (한도) (근로자 1인당)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 추진배경 :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 ▶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구분	주요대상	한도
본인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한도 없음
장애인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300만원
초중고생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 · 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원) · 예체능 학원비(만 9세 미만)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 추진배경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준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 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구분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추진배경 : 자녀 양육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 공모 · 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제고
- 주요내용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조정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 (코스닥 · 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조정 〉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2026년 5%, 2027년~ 9%) 적용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탁*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 추진배경 :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됩니다.

-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일 : 이후 2년간 유예

- ▶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

- 추진배경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그간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리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 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및 과세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
 -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격질서 혼란 방지 등 위해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 추진
- 시행일 :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존-변경 비교〉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기존	1일당 0.022% 〈국세청 계산〉	X	1일(日)당 0.022% 〈납세자 직접 계산〉
변경	(상동)	X	1월(月)당 0.67% 〈납세자 직접 계산〉

이번 개편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간소화되어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 추진배경 :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폐업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 (영세개인사업자 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 (선의 조건)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을 것
- ▶ (중복적용 금지)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적용기간 연장>

- ▶ (폐업·재기 기간 연장)
 - (폐업) 2024. 12. 31. → 2025. 12. 31. 이전 폐업
 - (재기) 2027. 12. 31. → 2028. 12. 31. 까지 재기
- ▶ (신청기간 연장) 2028. 12. 31.까지 → 2029. 12. 31.까지

<적용대상 확대>

- ▶ (체납액 기준 상향)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재기* 인정 확대)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중전)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or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

- 추진배경 :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 사이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 추진배경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합니다.

- * (종전) 기본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 기본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감면 확대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개정내용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관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

- 추진배경 : 유턴기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도입합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9

- ▶ (감면요건) 위기지역의 투자·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요건 신설
-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만 적용하던 감면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

- 추진배경 :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도입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합니다.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중전>				<개정>		
	낙후지역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신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 (중전) 3년 100% + 2년 50%
-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 추진배경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확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 추진배경 :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합니다.

* (현) 분기별 제출

▶ (시행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변경 전) → 2027년 1월 1일 이후(변경 후)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 추진배경 :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600→3,000만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 추진배경 : 임업 종사자 지원
- 주요내용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를 인하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4→3%)합니다.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4→3%

또한, 퇴직소득(회사부담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 추진배경 :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 → 3% 인하
 - 퇴직소득을 20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2028. 12. 31.)됩니다.

-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 50%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 주요내용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합니다.

- * (현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특별재난지역 30%]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신설] (~2천만원) 15%[상동]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 추진배경 :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 주요내용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추진배경 :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가 확대됩니다.

-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30%로 확대함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됩니다.

- ▶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 주요내용 :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 : 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 · 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
- ▶ 2025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 추가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 추진배경 :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주택 수요둔화로 주택 초과공급이 심화되며 지방 미분양 증가
- 주요내용 :
 - (세컨드홈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 양도세, 종부세: 공시가격 4→ 9억원 이하
- 시행일 : (인구감소관심지역 과세특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 추진배경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중고자동차 공제한도 신설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 추진배경 :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 시행일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 4%로 상향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조세탈루 방지
- 주요내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 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 추진배경 :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연금가입자의 연금계좌에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연금가입자가 소득 수령시 납부할 국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이 공제됩니다.
- ▶ 동 개정내용은 일반계좌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금년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서,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간접투자회사등 지급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

- 추진배경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 주요내용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현황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 추진배경 : 자료제출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외국인자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등 과세 면제 〉

- 추진배경 : 국제결제은행(BIS)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
- 주요내용 :
 - BIS는 국내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투자 중
 - BIS의 원화표시자산 투자확대를 위해 예금·환매채(RP), 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적용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는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개편하고, 이를 2026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품목 및 가중치 갱신 등을 통해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지수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소비자물가 기본분류인 지출목적별분류 개정*으로 신지수 및 과거계열 품목분류를 개편하여 관련 통계의 국내 및 국제 비교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2019) 및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개편(2025)

〈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

- 추진배경 :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5년 주기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 주요내용 :
 - (지수 기준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 (조사도시 및 권역) 인구·상권 변화를 고려한 대표성 점검 및 보완
 - (대표품목 및 가중치) 2025년 기준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반영
 - (품목분류) 개정된 지출목적별분류(COICOP-K, 2019) 반영
 - (통계작성방법 개선)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
- 공표일 : 2026년 12월 31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23년에 상향되었음에도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85만원이었습니다.

-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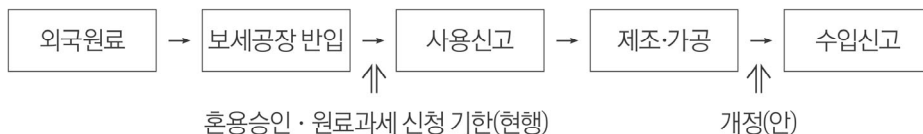
- 추진배경 :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 주요내용 :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 금액(250만원) 수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2026년 상반기 예정)

관세청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그간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 보세공장에서 혼용승인·원료과세 신청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사례 방지를 위한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 〉

- 추진배경 :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혼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 누락으로 과도한 추징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과세방식 신청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 주요내용 :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과세방식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 적용

현행	개정안
혼용작업 신청기한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 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그간 발급 이후 아무런 정보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부호의 사용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부호발급자 분들은 2027년 발급자의 생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됩니다.
- ▶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산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해외직구 물품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 ▶ 또한,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

- 추진배경 : 수입자 정보 현행화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
- 주요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 시행일 :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정보변경 하는 자부터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적용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관세청은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



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전분야 : 통합법규준수도/ 물류업체 : 법규수행능력평가/ 특송업체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평가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즉시폐지/ 법규수행능력평가 : 2027년부터 폐지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다수의 평가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업체의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역량을 진단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협력도 항목(가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실적, 경진대회 수상실적, 보세사 채용 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력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

- 추진배경 :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통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운영
 -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을 추가
- 시행일 : 2026년 1월(2025년 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분부터 적용)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신설됩니다.

- ▶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입 시(원금 1,800만원) 만기에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

- 추진배경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세대간 자산격차 완화
- 주요내용 :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①&② 동시충족)
 -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①&② 동시충족)
-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 정부 지원을 6%(일반형) / 12%(우대형)
-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원
- 시행일 : 2026년 6월(잠정)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등이 확대됩니다.

-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 ▶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전부(55개 항목) 등 한국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기존: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부(26개 항목))되며,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기존: 국문공시 후 3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주주총회,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됩니다.

-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가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주총 당일),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총 결과 공시에 추가됩니다.
-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적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하여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 예)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됨

**<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

- 추진배경 :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 위한 공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공시 대상항목 확대 등(2단계 의무화)
 - (주주총회,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기업 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추가 및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 시행일 :
 - (영문공시): 2026년 5월 1일(단,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3월 1일)
 - (주주총회 공시): 2026년 3월 1일(3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
 -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2026년 5월 1일(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토록 개편*하는 방안이 '25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나,
 - * (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14⑥9호) 개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일정으로 도입 및 공시
-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0.5~1.1%p) 신용대출 : 0.9~1.7% → 0.1~0.5% (△0.8~1.2%p)

〈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 추진배경 :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
- 주요내용 :
 -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으로 단축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 추진배경 :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기회 확대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 주요내용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
 -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
- 시행일 : 2026년 1월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 ▶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 시행일 : 2026년 1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됨

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 *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times$ (30/40) = 급여액 55만원
- ▶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times$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times$ 단축비율

< 일가정 양립제도 급여 상한액 인상 >

- 추진배경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 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 기준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times$ 단축비율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times$ 단축비율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2026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9일 (금)	1월 12일 (월)	1월 13일 (화)	1월 14일 (수)	1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449.40	1455.70	1464.10	1472.80	1477.50
일 본 엔 (JPY)	923.89	921.01	925.62	925.33	933.47
영 국 파 운 드 (GBP)	1947.63	1950.57	1971.26	1977.23	1985.98
캐 나 다 달 러 (CAD)	1045.52	1046.36	1055.13	1060.56	1064.44
홍 콩 달 러 (HKD)	186.02	186.74	187.81	188.81	189.49
위 안 화 (CNH)	207.26	208.44	210.64	211.25	211.83
유 로 화 (EUR)	1690.00	1693.42	1708.09	1715.00	1720.62
호 주 달 러 (AUD)	971.17	973.57	982.26	984.94	987.12
싱 가 폴 달 러 (SGD)	1127.72	1130.86	1139.07	1142.86	1147.6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56.78	357.36	360.39	362.98	365.00